

의안 번호	1509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】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. 11. 30.(금), 노세영 의원 외 7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2. 13.(목)

### 2. 제정이유

- 가. 중구에 거주·생활하는 청년에게 여러 분야에서 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,
- 나.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권리를 보호하고 청년의 생활안정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- 다. 청년의 참여확대, 능력개발,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)
- 라. 청년정책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)
- 마. 청년센터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- 바. 협력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)

#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 및 제3조
- 나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의 고용확대, 능력개발, 참여확대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일부 자구(안 제2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9조, 제21조, 제22조) 정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.

# 근거법규

##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“청년“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(생략)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~ ③ (생략)

제5조(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)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3. 5. 22.>

- ② ~ ⑤ (생략)

##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

제2조(청년의 나이)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“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3. 10. 30.>

## 양성평등기본법

-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~ ⑤ (생략)